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07991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변 론 종 결 2021. 3. 16.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4,180,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6. 2.까지는 연 7.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C, D이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96,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1)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7.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B이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은행, 보험가입금액을 88,0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7. 17. ~ 2020. 7. 16.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하고, 2018. 7. 17.경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소외 은행, 보험가입금액 88,000,000원, 보험기간 2018. 7. 17. ~ 2020. 7. 16.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B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대출거래약정(가계용)에 따라 금 80,000,000원을, 변제기한 2020. 7. 16.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위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2019. 6. 19.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20. 1. 21.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채무 84,180,64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보험약정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단 소외 은행의 지연손해금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율을 적용한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8. 6. 9. 피고 C, D으로부터 위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1) 피고 B는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F는 2018. 7. 4.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8. 7. 6. 피고 C, D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소외 은행은 2020.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20. 3. 9.경 피고 C,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4,180,64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20. 2.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6.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5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여 피고 C, D에게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C, D의 무자력 여부와는 상관없이(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피고 C, D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인 1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피고 B이 부담하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담보한도액 96,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층의건물의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8층 호 84.9468㎡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 23999㎡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239990000분의 287318

-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행한다.